

###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

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(보호자)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을 다음 사항 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.

**1. 계약기간** :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. 단,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 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음

**2. 계약목적** : 노인복지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,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.

- ① 수급자 권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
-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
-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

### 3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

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(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)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, 기관은 변경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,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% 부담
- ③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금

| 구분           | 1등급       | 2등급       | 3등급       | 4등급        | 5등급       | 인지지원 등급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
| ' 26년<br>한도액 | 2,512,900 | 2,331,200 | 1,528,200 | 1,409,700  | 1,208,900 | 676,320 |
| 본인부담금        | 기초생활수급자   |           |           | 0% 부담      |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| 차상위 계층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감경6%, 감경9% |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| 일반수급자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15% 부담     |           |         |

④ 주야간보호 수가표

| 분류번호 | 분                   | 류        | 금액(원)  | 본인부담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라-1  | 3시간 이상~<br>6시간 미만   | 장기요양 1등급 | 41,820 | 6,273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장기요양 2등급 | 38,720 | 5,808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장기요양 3등급 | 35,740 | 5,361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장기요양 4등급 | 34,120 | 5,118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장기요양 5등급 | 32,490 | 4,874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인지지원등급   | 32,490 | 4,874  |
| 라-2  | 6시간 이상~<br>8시간 미만   | 장기요양 1등급 | 56,060 | 8,409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장기요양 2등급 | 51,930 | 7,790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장기요양 3등급 | 47,940 | 7,191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장기요양 4등급 | 46,300 | 6,945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장기요양 5등급 | 44,650 | 6,698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인지지원등급   | 44,650 | 6,698  |
| 라-3  | 8시간 이상~<br>10시간 미만  | 장기요양 1등급 | 69,730 | 10,460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장기요양 2등급 | 64,590 | 9,689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장기요양 3등급 | 59,640 | 8,946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장기요양 4등급 | 58,010 | 8,702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장기요양 5등급 | 56,360 | 8,454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인지지원등급   | 56,360 | 8,454  |
| 라-4  | 10시간 이상~<br>13시간 이하 | 장기요양 1등급 | 76,820 | 11,523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장기요양 2등급 | 71,160 | 10,674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장기요양 3등급 | 65,750 | 9,863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장기요양 4등급 | 64,090 | 9,614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장기요양 5등급 | 62,460 | 9,369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인지지원등급   | 56,360 | 8,454  |
| 라-5  | 13시간 초과             | 장기요양 1등급 | 82,370 | 12,356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장기요양 2등급 | 76,310 | 11,447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장기요양 3등급 | 70,500 | 10,575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장기요양 4등급 | 68,860 | 10,329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장기요양 5등급 | 67,240 | 10,086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인지지원등급   | 56,360 | 8,454  |

#### 4.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
#####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

-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 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
-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 할 수 있다.
- 「소득세법」 제59조의 4제2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 (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)
-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
- 급여제공 범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

-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
-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

##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

-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
-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.
-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.
-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.
-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.
-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
-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 할 의무
-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

## 5.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

###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

-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
-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-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

### ② 수급자의 의무

- 월 이용료 납부 의무
- 기관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
- 기관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
-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
### ③ 수급자의 권리

-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. 또한,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.
-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.
-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.
-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,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.
-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.
-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.
-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, 비용(비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)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.

## 6. 계약 해제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-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 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-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
-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-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- ⑦ 수급자, 보호자가 성적이거나 정신적인 질병으로 상해나 그에 반하는 상황을 일으켰을 때

## 7. 기타

-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(보호자)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, 인증 기간 단위로 체결하고, 서비스 제공시간은 주야간 수가 분류 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한다.
-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(보호자)에게 계약 기간, 서비스 내용 및 시간, 서비스 장소,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, 급여제공 범위,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,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, 급여제공계약서 부분 1부를 제공한다.
- ③ 기관은 수급자가 서비스(방문요양, 목욕등)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.